



시보는 공무원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 포항시보

제949호 2013. 8. 13(화)

### ◀ 고 시 ▶

-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제2013-102호) ..... 2
-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제2013-103호) ..... 7

### ◀ 공 고 ▶

-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공고(제2013-1354호) ..... 8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 공고(제2013-1359호) ..... 10
-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3-14호) ..... 11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 공고(남구 공고 제2013-3호) ..... 22

회 람									
--------	--	--	--	--	--	--	--	--	--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3 - 102호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130번지 일원의 일월문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32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5일

포 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가. 공간시설(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일월문화 공원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130번지 일원	-	증)23,284	23,284	-	

■ 공원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일월문화 공원	· 주재공원신설 A = 23,284㎡	연오랑 세오녀의 신화의 배경으로 전해지는 대상지 일원에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여가 공간 및 신라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함

## 3.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 가. 조성계획 총괄표

시 설 구 분	시 설 내 용		부 지 규 모		건 축 규 모		비 고
	도 입 시 설 물		면 적 (㎡)	구성비 (%)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23,284	100.0	150	150	
공 원 시 설 소 계			16,176	69.5	150	150	
공 원 시 설	도 로 및 광 장	진입광장, 해병광장, 연오광장, 해광장	5,674	24.4			
	조 경 시 설	달맞이원, 일월지	5,041	21.7			
	휴 양 시 설	일월정	1,094	4.7	30	30	
	교 양 시 설	이야기원, 놀이마당, 연오랑세오녀집	2,532	10.9	60	60	
	편 의 시 설	주차장	1,455	6.2			
	관 리 시 설	일월집	380	1.6	60	60	
녹 지	녹 지		7,108	30.5			

## 나. 도로 결정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중 점	비고
합 계			1.5~ 3.0	616	1,530				
소로	3	1	3.0	156	491	주관람로	진입광장	해광장	가각포함
소로	3	2	3.0	98	347	주관람로	소로3-1	해병광장	가각포함
소로	3	3	3.0	19	69	주관람로	일월정	해병광장	가각포함
소로	3	4	2.0	89	178	시설간연결로	소로3-1	일월정	가각포함
소로	3	5	2.0	39	78	시설간연결로	소로3-1	일월정	가각포함
소로	3	6	2.0	24	49	시설간연결로	소로3-5	해병광장	가각포함
소로	3	7	2.0	5	11	시설간연결로	주차장	진입광장	가각포함
소로	3	8	2.0	32	67	시설간연결로	소로3-9	소로3-2	가각포함
소로	3	9	1.5	102	162	진입로	부지경계	해광장	가각포함
소로	3	10	1.5	52	78	산책로	주차장	소로3-4	가각포함

## 다. 세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 축 면 적		규 모	구 조	비 고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23,284	150	150			
		시 설 면 적		16,176	150	150			
도로 및 광장	소계			5,674	-	-			
		도 로		1,530	-	-			
	1-1	진입광장	세계리 132-5전	711	-	-			
	1-2	해병광장	세계리 127답	2,343					
	1-3	연오광장	세계리 121-1전	610					
	1-4	해광장	세계리 118-1답	480					
조경 시설	소계			5,041	-	-			
	2-1	달맞이원	세계리 130답	2,416	-	-			
	2-2	일월지	세계리 122전	2,625	-	-			
휴양 시설	소계			1,094	30	30			
	3-1	일월정	세계리 129전	1,094	30	30	1층, 1동		휴게정자
교양 시설	소계			2,532	60	60			
	4-1	이야기원	세계리 119-1답	1,552	-	-			
	4-2	놀이마당	세계리 120-1전	680	-	-			
	4-3	연오랑세오녀 집	세계리 104-1답	300	60	60	1층, 1동		체함관
편익 시설	소계			1,455	-	-			
	5-1	주차장	세계리 산67-4임	1,455	-	-			
관리 시설	소계			380	60	60			
	6-1	일월집	세계리 217답	380	60	60	1층, 1동		관리사무소및 화장실
		녹 지 면 적		7,108	-	-			
녹지		녹 지		7,108	-	-			

4. 도시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 실용 생략)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http://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도시계획과 054-270-3466)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고시 제2013 - 103호

##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연안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이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6일

포 항 시 장

### ○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 내용

사업위치	사업명	시행자	사업구분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일원	포항시 구항지구 연안여가 휴양시설 구성사업	포항시장	연안여가 휴양시설 (해양문화형)	부유식 해양공원 (A=9천㎡)	10,000	2013.8 ~ 2016.12

공 고

포항시 공고 제 2013 - 1354 호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공고

우리시 관내 노상 등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하오니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강제 폐차함은 물론 차량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같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150만원 이하의 범칙금)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013. 8. 5.

포 항 시



- 1. 공 고 기 간 : 2013. 8. 5. ~ 2013. 9. 3. (30일간)
- 2. 폐 차 장 소 : 포항시 관내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체 - 붙임 내역서 참조
- 3. 폐차 예정일 : 2013. 9. 4. 부터
- 4. 문 의 처 : 포항시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담당 ☎(054)270-3643
- 5.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6. 강제처리대상차량 : 13러1676호 외 2대



강제처리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 총건수 : 3 ◆ 공고기간 : 2013-08-05에서 2013-09-03까지

관리번호	자동차번호 성	차 명 주민번호	주 소	범치장소		이해관계인 내역
				범치장소	모관장소	
2013-48	13라1676 오호승	아반떼 770123- *****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학삼 길 65	포항시 남구 오천읍 중 무로 28 서문부동산앞 도로 (주)태경자동차해체재활 용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 - 손배법위반과태료 4(2013.02.15.)</li> <li>● 포항시남구 복지환경위생과 - 환경개선부담금 대채(2011.12.23.)</li> <li>● " " 세무과 - 지방세 체납(2012.08.01.)</li> </ul>
2013-62	경북41도6080 하장창	마티즈 720812-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 리 286-6 15/1 202호	포항시 남구 대이로175 번길 6-10 신세기골프 영 이면도로  신진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 - 손배법위반과태료 4건 (2013.02.15.)</li> <li>● 포항시남구 세무과 - 지방세 체납(2012.08.01.)</li> <li>● " " 건설교통과 - 주차차위반 12건</li> <li>● 포항시북구 건설교통과 - 주차차위반 2건</li> <li>● 구미시 세무과 - 지방세체납 (2006.09.13.)</li> <li>● " " 차량등록사업소 - 의무보험 및 책임보험 5건</li> <li>● 구미경찰서 경비교통과 - 교통과태료(2006-035905)2006.10.12.</li> <li>● 서산경찰서 경비교통과 - 과태료 체납 7건</li> <li>●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 건강보험료체납(2002.06.27.)</li> <li>■ 지당 : LG카드(주) 2001.11.27. ⇒ 신한카드</li> </ul>
2013-67	47소8271 김병길 (성호모티스)	EF쏘나타 810602- *****	(명의자 주소) 충남 보령시 수청1길 34 (명천 동) (사용본거지) 충남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375	포항시 북구 영흥동 만 물 종합상사 앞 도로  대원오토D&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중랑구 교통지도과 - 주차차위반과태료(2006.06.28.)</li> <li>● 평택시출판출장소 지역경제과 - 주차차위반과태료(2008.11.28.)</li> <li>● 예산군 민원봉사과 - 경시지연과태료(2009.03.30.)</li> <li>● 광주 북구 교통과 - 주차차위반과태료(2009.11.05.) ⇒ 교통지도 과</li> <li>● 예산경찰서 경비교통과 -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 등 64건</li> </ul>

포항시 공고 제2013-1359호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 절차 등) 규정에 의거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로 등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공고내역

등록번호	상 호	소 재 지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분야	등록일
2013-1	현대자동차(주) 포항서비스센터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로 102	- 휘발유·가스분야(일산화탄소·탄화수소 ·질소산화물·공기과잉플) - 경유분야(매연)	2013.8.1
2013-2	한일커머레일	포항시 남구 연일읍 형산강 남로 406	- 경유분야(매연)	2013.8.1
2013-3	(주)영일정비	포항시 남구 호동로 122(호동)	- 휘발유·가스분야(일산화탄소·탄화수소 ·질소산화물·공기과잉플) - 경유분야(매연)	2013.8.6

2013년 8월 6일

포 항 시 장

##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3 - 14호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3년 8월 5일

**포항시장**

###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법 개정으로 농정심의회 명칭이 바뀜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농업인의 영농규모 증대에 따른 대상별 용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농촌발전기금의 확대지원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기금운용심의회 기능 명칭 개정(안 제6조)
  - 심의회의 기능을 “포항시 농정심의회”에서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
- 기금 운용에 대한 회계공무원 직위 명칭 개정(안 제8조)
  - 기금운용관 : 경제산업국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 기금출납원 : 농정기획업무 담당주사 → 농촌발전기금업무 담당주사
- 기금의 용자 대상별 용자한도액 상향 개정(안 제10조)
  - 농업인 : 3천만원 → 1억원
  - 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등 농업인 조직과 수출업체:5천만원→ 2억원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 수정

### 3. 관련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3년 8월 05일 ~ 2013년 8월 26일 (21일간)

### 6. 의견제출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친환경농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제출처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친환경농정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전화 054)270-2662, 팩스 054)270-2670, E-mail : hcs6109@korea.kr

라. 제출서식

입법예고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설치하고 이를”을 “설치하고”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1”을 “각 호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예탁 하여야”를 “예탁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하되”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시장은 그 위탁”을 “시장은 위탁”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

제6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의 심의회의 기능은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회개연도개시”를 “회개연도 개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1과”를 “소속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제산업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항 제3호 “농정기획업무 담당주사”를 “농촌발전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9조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첨부하여”를 “붙여”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5천만원”을 “2억원”으로 한다.

제11조 중 “제4조제1항에 규정된”을 “제4조제1항의”로, “연체이자율”을 “연체 이자율”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상환기일 전이라”를 “상환기일 전이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간내”를 “기간 내”로, “범위내 에서심의회의”를 “범위에서 심의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허위 자료”를 “거짓 자료”로 한다.

제15조 중 “제출 하게”를 “제출하게”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각호와 같다”를 “각 호와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관리에 관하여”를 “관리”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항에 대하여는”을 “사항은”으로 한다.

제1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농업 및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설치하고</u> ----- -----</p>
<p>제2조(기금의 설치) ① (생 략)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수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p>	<p>제2조(기금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u>따라</u> ----- -----</p>
<p>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3. (생 략) ②시장은 제1항제1호에 의한 시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p>	<p>제3조(기금의 조성) ① ----- <u>각 호</u>----- 1. ~ 3. (현행과 같음) ② ----- <u>따른</u> ----- -----</p>
<p>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 1의 사업을 위한 용자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등에 사용한다. 1. ~ 8. (생 략) 9. <u>기타</u>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등 ② (생 략)</p>	<p>제4조(기금의 용도) ① ----- <u>각 호 어느 하나</u>----- ----- 1. ~ 8. (현행과 같음) 9. <u>그 밖에</u> ----- ----- 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p>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 -----</p>



리관에게 예탁 하여야 한다.

----- 예탁하여야 -  
---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포항시를 관할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  
-----  
----- 제3조에 따른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업무를 취급함에 따른 수수료는 기금 운용 수익금으로 하되, 수수료 지급 대상업무와 수수료의 요율 및 지급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  
-----  
----- 하며,  
-----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업무를 위탁할 경우, 시장은 그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기금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 사무 취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  
----- 시장은 위탁-----  
-----  
-----  
-----따라 -----  
-----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① (생략)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각 호-----  
-----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3. 그 밖에 -----

중요한 사항

③제1항에 의한 심의회의 기능은 포항시농정심의회가 대행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당해 연도 기금사용계획
- 3. (생략)
-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개연도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 1. 기금운용관 : 경제산업국장
- 2. (생략)
- 3. 기금출납원 : 농정기획업무 담당 주사
- ② (생략)

-----

③ 제1항의 심의회의 기능은 포항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현행과 같음)
- 2. 해당 -----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

③ ----- 따라 ----- 회개연도 개시 -----

제8조(회계공무원) ① -----

-----  
-소속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

- 1. ----- 농업기술센터소장
- 2. (현행과 같음)
- 3. -----농촌발전기금업무 담당 주사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용자대상자 선정) ① (생략)  
 ②제1항에 의한 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에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용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0조(용자금의 한도) 기금의 용자 대상별 용자금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다.

- 1. 농업인 : 3천만원
- 2. 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등 농업인 조직과 수출업체 : 5천만원

제11조(용자 및 상환조건 등)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용자대상사업에 대한 용자금의 지원시기, 용자기간, 상환방법, 상환이율, 연체이자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용자금의 회수) 기금관리수탁기관은 용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용자금의 전

제9조(용자대상자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각호의 어느 하나-----

1. ~ 3. (현행과 같음)

③ ----- 제1항에 따라 ----- 붙여 -----

제10조(용자금의 한도) -----  
 -----  
 -----  
 -----  
 -----  
 -----

- 1. ----- 1억원
- 2. ----- 2억원

제11조(용자 및 상환조건 등) 제4조제1항의 -----  
 -----  
 ----- 연체 이자율 -----

제12조(용자금의 회수) -----  
 -----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상환기일 전이라 -----

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1. ~ 4. (생략)
- 5. 기타 기금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회수를 결정할 때

제13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시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내에 용자기금의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의 별위내 에서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용자의 금지) ①기금을 용자받은 사업자(선정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향후 2년간은 용자대상에서 제외한다.

-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용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 2. ~ 5. (생략)
- ② (생략)

제15조(점검 등) 시장은 기금관리수탁기관과 기금을 용자받은 자에 대하여 용자업무, 기금운용 및 관리상황, 사업이행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

- 1. ~ 4. (현행과 같음)
- 5. 그 밖에 -----  
-----  
-----.

제13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  
-----  
----- 기간 내-----  
-----  
----- 범위에서 심의회의 -----  
-----.

② 제1항에 따라 -----  
-----  
-----  
-----

제14조(용자의 금지) ① -----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거짓 자료-----  
-----
- 2. ~ 5.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점검 등) -----  
-----  
-----  
-----

제출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용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기금의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출하게 -----  
-----  
-----  
-----  
-----

제16조(기금의 결산) ① -----  
-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

② ----- 따른 -----  
-----  
각 호와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  
-----  
-----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  
관리-----  
-----  
-----  
----- 따른다

② ----- 사항은 -----  
-----  
-----

제18조(시행규칙) ----- 시행에 -----  
-----  
-----

포항시 공고 제2013 - 3 호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소하천인 "우복소하천"(포항시 남구 연일읍 우복리 ~ 대송면 남성리)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 .

포항시남구청장

구 분	내 용	비 고
1. 사 업 명	○ 2012년 제16호태풍 "산바"피해복구 (연일읍 우복소하천 수해복구공사)	
2. 사업시행자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90 ○ 포항시남구청장 방진모	
3. 사업시행 규모	○ 연일읍 우복소하천 수해복구공사 - 축제 : 617m, - 호안 : 617m - 교량 : 1개소	
4. 사업 착수 예정일 준공 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3. . ○ 준공예정일 : 2013. .	
5. 사용 또는 수용할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소유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 붙임 참조		
6. 손실보상에 관한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 기타	○ 관계서류의 사본은 2013. 8. 28일까지 포항시 남구청 건설교통과(054-270-6413)에서 열람 가능	

연일읍 우복소하천 수해복구공사 편입토지 조서

일련 번호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비고
	읍	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성명	
1	대송면	남성리	450-1	전	688	450-4	21	이중호	포항시 남구 대송면 남성리 465
2	대송면	남성리	450-2	전	307	450-5	7	김동호	포항시 남구 대송면 남성리 450-2
3	대송면	남성리	449-1	전	258	449-4	6	김동호	포항시 남구 대송면 남성리 450-2
4	대송면	남성리	449-3	전	1,147	449-9	303	김용휘 외2인	포항시 남구 정몽주로601번길 19,라~408 (청림동,동해진달래아파트)
5	대송면	남성리	449-8	전	202	449-8	202	김용휘 외2인	포항시 남구 정몽주로601번길 19,라~408 (청림동,동해진달래아파트)
11	대송면	남성리	450-3	전	1,064	450-6	139	김복순	경주시 천북면 서평길 54-14
12	대송면	남성리	448	전	1,583	448-2	95	안영길	포항시 남구 연일읍 연일로 166, 101동 513호(미래마을)
13	대송면	남성리	413-3	구	23	413-3	2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4	대송면	남성리	267-9	구	123	267-9	12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5	대송면	남성리	267-7	답	1,479	267-16	86	김진환	포항시 남구 대송면 남성리 267-7
16	대송면	남성리	267-10	구	73	267-10	7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7	대송면	남성리	446-1	구	321	446-4	8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8	대송면	남성리	458	전	159	458-1	5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9	대송면	남성리	459-1	구	331	459-3	9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0	대송면	남성리	480-1	구	1,144	480-3	66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1	대송면	남성리	480-2	전	456	480-4	9	구철수	포항시 남구 대정동 468-14 이동현대빌타운 114-202
22	대송면	남성리	468-3	구	1,491	468-7	35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3	대송면	남성리	435-1	대	1,025	435-4	70	이규연	포항시 남구 대송면 남성리 435-1

연일읍 우북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지장물 조서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대송면 남성리	413-2	담장	블럭시멘트 H=1.6m	m	13.1	박말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버리 1123-7	
대송면 남성리	267-7	가작	철 골판넬	m <sup>2</sup>	42.8	김진환	포항시 남구 대송면 남성리 267-7	
대송면 남성리	450-1	담장	블럭시멘트 H=1.6m	m	1.8	이중호	포항시 남구 대송면 남성리 465	
		담장	블럭시멘트 H=1.6m	m	35			
		건물	블럭콘크리트	m <sup>2</sup>	62			
		가주		m <sup>2</sup>	52.4			
		건물	블럭콘크리트	m <sup>2</sup>	40.8			
대송면 남성리	449-3	건물	블럭콘크리트	m <sup>2</sup>	129.3	김용취 외2인	포항시 남구 정몽주로861번길 19,라-408 (청림동,동해진달래아파트)	
		화장실	벽돌	m <sup>2</sup>	1.7			
		담장	블럭시멘트	m <sup>2</sup>	26			
		건물	블럭콘크리트	m <sup>2</sup>	140.5			
대송면 남성리	458	창고	벽돌	m <sup>2</sup>	5.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